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8 선고 2022가단5358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. 11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등기국 2019. 11. 21. 접수 제2106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김소연

별지